의안번호	제490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8월 26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490

제출연월일 : 2020년 8월 26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2011년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에 반영,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내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안은 민간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분양한 토지에 대해 일부 기업이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입주계약서에 의거 부지를 환수하여 국책사업 및 공공사업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공유재산(임야) 교환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라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 괴산군의 군유림과 국립공원 대체공유지로 편입되는 도유림의 교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4 일원(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 2020. ~ 2024.
○ 규　　모 : 부지 15,406㎡
○ 사 업 비 : 7,500백만원(도비 3,000, 시비 4,500)
○ 취득사유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매입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33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20. 9. ~ 10.
○ 규　　모 : 부지 17,112.5㎡
○ 사 업 비 : 3,403백만원(최초 부지 분양금액)
○ 취득사유 : 일부 기업 입주포기로 입주계약에 따라 환수조치.
향후 국책사업 및 공공사업 등으로 활용.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취득》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5-1
○ 사업기간 : 2020. 9. ~ 2020. 12.
○ 규　　모 : 임야 711,481㎡
○ 사 업 비 : 1,273,551백만원
○ 취득사유 : 입목상태가 양호, 도유림 집단화로 산림경영 용이

□ 재산의 처분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처분》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25-3
○ 사업기간 : 2020. 9. ~ 2020. 12.
○ 규　　모 : 임야 774,545㎡
○ 사 업 비 : 944,945백만원
○ 처분사유 :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라 괴산군에서 민원해소 차원 요청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20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4	1,813,535	7,022,048	3	743,999.5	12,176,410	7	2,557,534.5	19,198,458
		건물	7	12,610.04	34,684,779				7	12,610.04	34,684,779
		기타	1	1	1,000,000				1	1	1,000,000
	매입	토지	3	1,808,535	6,700,000	2	32,518.5	10,902,859	5	1,841,053.5	17,602,859
		건물	7	12,610.04	34,684,779				7	12,610.04	34,684,779
		기타	1	1	1,000,000				1	1	1,000,000
	교환	토지	1	5,000	322,048	1	711,481	1,273,551	2	716,481	1,595,599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3	45,310.7	11,831,680	1	774,545	944,945	4	819,855.7	12,776,625
		건물	1	394.83	319,955				1	394.83	319,955
		기타									
	매각	토지	2	44,371.7	10,917,247				2	44,371.7	10,917,247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939	914,433	1	774,545	944,945	2	775,484	1,859,378
		건물	1	394.83	319,955				1	394.83	319,955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변경) 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계	토지	2건	32,518.5	10,902,859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정상동 12-4번지 일원	15,406	7,500,000	2020~2024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부지 취득	충북개발공사	
	건물							
	기타							
2	토지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25-41 등 2필지	17,112.5	3,402,859	2020	국책기관 유치 및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알테오젠 등 2회사	환수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2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4-3)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면적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면적						
계	토지	취득		1건	711,481	711,481	1,273,551	2020	국립공원 편입처분 대체토지	괴산군	
		처분		1건	774,545	774,545	944,945	2020	국립공원 편입토지	충청북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1		취득	임야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5-1	711,481	711,481	1,273,551	2020	국립공원 편입처분 대체토지	괴산군	
		처분	임야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25-3	774,545	774,545	944,945	2020	국립공원 편입토지	충청북도	
2		취득									
		처분									
3		취득									
		처분									

관 계 법 령 발 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